2017. 4.12 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8-약관- 185호(2018.12.13)

2019.1.14 개정

「미래행복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미래행복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 예금 약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이라 함), 동법 시행령, 통일부 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함)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①이 예금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승인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KEB하나은행 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으로 등록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과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유사사업 참여자는 제외합니다.

제 3 조 예금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72개월, 기관은 78개월로 합니다. (단,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고객의 적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지원되는 적립금(이하 "미래행복지원금"이라 함)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원기간이 만료된 후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서 고객이 별도 해지 요청이 없는 경우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미래행복지원금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 사이의 금액 중 5만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2년 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이후 1년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관은 0원 이상 원단위로 합니다.

제 6 조 적립방법

①고객은 매월 1회에 한해 고객이 선택한 제 5조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한 금액으로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미래행복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②제4조의 가입기간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미래행복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거주지 보호기간이 경과했을 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후 고객이 적립하더라도 미래행복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제 7 조 해지방법

①고객이 기관에 이 예금의 해지신청을 한 경우,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승인한 해지유형에 따라 해지됩니다. 이 경우 고객의 적립금은 고객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②기관이 적립한 미래행복지원금은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 해지로 승인한 경우 고객이 지정한 본인명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며, 환수 해지로 승인한 경우 기관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부분지급 해지로 승인한 경우 고객과 기관의 통장으로 기관이 승인한 비율에 따라 각각 분할입급 됩니다.

제 8 조 미래행복지원금 지원금액 및 조건

① 이 예금에 가입하여 월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정착지원법에서 정한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미래행복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② 고객의 불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월에는 미래행복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이 예금을 가입한 후 2년이 지나 해지 신청한 경우 연단위(2년, 3년)로 미래행복지원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며, 연단위(2년, 3년)을 초과하는 미래행복지원금은 환수됩니다.

④ 제 ③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사유로 승인한 경우 해지 시점에 관계없이 지급시까지 입금된 미래행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제 9 조 적립중지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은 약정기간 중 3회에 한하여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 적립중지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적립중지기간 중에는 적립이 불가능하며, 미래행복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단, 임신 및 출산의 경우에 한하여 누적 적립중지 기간 포함 2년까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이자 지급방법

① 이 예금의 만기 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③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각 불입금마다 제 1항에 의한 금리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④ 고객이 만기일 이후 예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은행은 만기일부터 만기 후 1개월까지는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를,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지급일 현재 고시된 3년제 적립식예금 약정금리의 1/2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제 5항의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은행은 이 예금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고객 명의의 불입금에 대하여 최대 연 2.5%의 우대금리를 계약일 당시 고시한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1.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날에 고객 명의의 KEB하나은행 입출금계좌에 타인으로부터 50만원 이상 급여 이체된 경우 (연 1.0%)

2.이 예금 가입 후 최초 2년간 총 24회의 적립금이 입금되는 경우 (연1.0%)

3.이 예금 가입 후 최초 3개월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카드 체크(신용)카드 결제금액 당행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연 0.5%)

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고객이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이 예금계좌로 매월 자동이체를 통하여 불입금을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익월 1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총합 월10회 면제합니다. 단, 은행은 가입월 및 그 익월까지는 자동이체 여부와 관계 없이 총합 월 10회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전자금융(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통장 재발행 수수료

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에 급여 이체된 경우(주1)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 , '급여하나통장', '주거래하나통장', '연금하나통장'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제 12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이 예금은 양도 및 담보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제 13조 기타

①위 특약 사항 변경 시 은행은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직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하며, 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고시한 '운영지침'에 따릅니다.